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3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 장동혁 • 유상범 • 곽규택

조배숙・주진우・송석준

박준태 • 서범수 • 김도읍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이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를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거침입강제추행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만,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만,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 법 _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 도)----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 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 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 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 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 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 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신 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 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만, 제297조, 제2 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u>다.</u>

②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 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 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만,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